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62580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500조, 제6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6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0. 20 선고 2004나2247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남BA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CA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양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0. 20. 선고 2004나22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D(이하 '우D'이라고 한다)에게 1997. 11. 25. 250억 원을 변제기는 1998. 11.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1998. 1. 23. 77억 원을 변제기는 1999. 1. 22.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우D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1997. 11. 25.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50억 원, 보증기간 1998. 11. 24.까지로 하는 대출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고 한다)을, 1998. 1. 23.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77억 원, 보증기간 1999. 1. 22.까지로 하는 대출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의 대출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우D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2월이 경과한 때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약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5항), 피고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의 주채무의 원금 이외에 보증부대출의 원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과 보증채무 이행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이행기한 익일부터 보증부대출의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속채무로 이행하도록 규정(제9조)되어 있는 사실, 우D이 1998. 7. 25. 기업개선작업(Work 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우D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1998. 11. 16. 우D에 대한 기존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와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금융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하 '제3차 협의회 의결'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1998. 12. 31. 이 사건 제1보증의 보증기간을 1999. 2. 24.로 연장하고,

1999. 3. 30., 1999. 5. 24., 1999. 10. 5., 1999. 11. 30. 이 사건 제1, 2 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8. 12. 31. 이 사건 제1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출보증약관 제9조에 기한 연장 신청 이전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종속채무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연체이자 지급특약’이라고 한다)을 기재한 추가보증서를 발급하였고, 1999. 3. 30., 1999. 5. 24., 1999. 10. 5., 1999. 11. 30. 이 사건 제1, 2보증의 보증기간을 각 연장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기업개선작업계획에 의해 유예된 발생이자에 대하여 추후 대위변제 발생시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범위(종속채무)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유예이자 지급특약’이라고 한다)을 기재한 추가보증서를 각 발급한 사실, 우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에 기한 이자를 1998. 4. 24.까지, 이 사건 제2대출에 기한 이자를 1998. 4. 23.까지 각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2000.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에 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01. 5. 8. 이 사건 제2대출 원금 77억 원 전액을, 2001. 5. 17.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중 150억 원, 2001. 5. 24. 이 사건 제1대출 나머지 원금인 100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연체이자 지급특약은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하여 우D의 이자연체일 다음날인 1998. 4. 25.부터 제1대출의 변제기로서 제1차 보증기간 만료일인 1998. 11. 24.까지 이 사건 제1대출 약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피고의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고, 유예이자 지급특약은 이 사건 각 대출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를 각 피고의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의 종전 의무를 주의적으로 재차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시의 각 계산내역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1998. 4. 24. 또는 1998. 4. 25.부터 피고가 각 대출원금을 모두 대위변제한 2001. 5. 8. 또는 2001. 5. 24.까지의 각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3차 협의회 의결에서 정한 조정금리가 이 사건 각 보증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연체이자 지급특약 및 유예이자 지급특약은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3차 협의회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채권은 의결권행사의 기준이 되는 순여신채권액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해서는 피고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 원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3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상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특약이나 유예이자 지급특약이 당초의 약정이율이나 지연이율이 아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하향조정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취지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우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2000. 3. 3.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이자를 현실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별도의 대출금채무로 전환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에 불과하여 기존 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준소비대차 내지 대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